

# 정 관 (定 款)

제정 2013. 04. 01.  
개정 2014. 01. 24.  
개정 2016. 02. 17.  
개정 2017. 09. 13.  
개정 2017. 11. 02.  
개정 2018. 10. 08.  
개정 2024. 02. 19.

##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식회사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1. 청소용역업
2. 방역소독업
3. 기타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정하는 위탁사업 등(개정 2017.09.13.)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 인터넷홈페이지(<http://www.smrtdgen.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할 수 없을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서울신문에 이를 게재한다.(개정 2018.10.08.)

##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40,000주 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등 8종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의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11조(명의개서) ①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명의를 개서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양수한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 회사에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2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을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13조(주권의 재발행) ①주권의 분할·병합·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제권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8.)

**제14조(수수료)** 회사는 제11조 내지 제 13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이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적대리인이나 대표자는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 성명·주소와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주주의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 영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개정 2018.10.08.)

②삭제(2018.09. .)

③제1항의 경우 이외의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8.)

### 제 3 장 주주총회

**제17조(총회의 소집)**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사장)이 유고 시에는 제2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전자 문서로 통지를 발송한다. 다만,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제 4 장 이사 · 이사회

**제27조(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서 따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개정 2018.10.08.)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그 의안의 결정
2. 상근, 비상근 이사의 업무분임
3. 경영방침, 경영계획 및 예산의 수립과 변경
4. 중요 사내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차입 및 차관
6.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
7. 중요한 손실 처분
8. 대표이사 유고 또는 신상에 관한 사항 관련 주주총회 의장 선임
9.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11.02, 2018.10.08.)

③이사회 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28조(이사의 수와 선임) ①이 회사에 이사 1명 이상을 두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의 해임) ①경영성과 평가는 매 회계연도 다음연도 3월내 실시 하되, 2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경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경영성과 평가 결과 이사의 경영능력 부족 등 책임이 인정될 경우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 시 1년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01.24, 2016.02.17., 2017.11.02., 2024.02.19.)

②제1항의 임기는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이사의 보선 증원) 이사에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증원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 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결 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주주총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보결 선임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10.08.)

**제32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8.10.08.)

**제33조(이사의 직무와 의무)** ①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경영을 총괄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사규에 정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8.)

④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10.08.)

⑤ 회사의 상임임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18.10.08.)

⑥ 비상임이사는 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2018.10.08.)

⑦ 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18.10.08.)

**제34조(이사회 결의)** ①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대출금의 기한연장, 은행차입금 등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규정의 개폐 등 긴급하거나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서면(회람식)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내용,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개정 2017.11.02.)

**제36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개정 2018.10.08.)

②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0.08.)

**제37조(상담역 및 고문)** 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5 장 감사위원회

**제38조(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사의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7.11.02.)

**제39조(감사의 임기) 삭제** (2017.11.02.)

제40조(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제38조의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감사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한다.(개정 2017.11.02.)

제41조(감사위원회의 직무)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개정 2017.11.02.)

제42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고, 각 감사위원과 위원장이 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보관한다.(개정 2017.11.02.)

제43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삭제(2017.11.02.)

## 제 6 장 계 산

제44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서울교통공사의 일반회계년도에 의한다.(개정 2017.09.13.)

제4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한다.(개정 2017.11.02.)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2, 2018.10.08.)

- ④대표이사(사장)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7조(이익배당)** ①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최종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때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주주의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④주주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 의결,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규의 제정)** 이 회사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고 규정의 시행세칙은 대표이사가 정하여 시

행할 수 있다.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정관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정관 제5장(감사위원회) 및 제45조 제①항, 제③항의 개정 내용은 기 선임된 감사의 임기 종료 후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이사는 선임 시 임기를 보장한다.

②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감사는 선임 시 정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